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9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5.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노동부의 실언장담』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9일자 14면)

내 용 :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장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는 단정은
기우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1년
씩 갱신하는 방식이어서 노조를 결성하면 계약 연
장이 안 돼 당장 강제 출국 될 텐데 쉽게 노조를 결
성하겠습니까”.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노동부 관
계자가 호언장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호언장담은 1년도 안 돼 ‘실언장담’이
돼버렸다. 최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
조합이 결성돼 노동부에 허가서 제출을 앞두고 있
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노조원’들이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이라고 볼 순 없지만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은 아주 높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입
국한 근로자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 중 노조 결성
을 보장받는 부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불법체
류자뿐이다. 결국 이번 이주노동자 노조는 고용허
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
다. 작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밀어붙일 때 중소
기업들은 임금상승보다 노조 결성을 더 우려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위 3D 업종의 사업
장은 대부분 고용인원도 많지 않고 영세한 관계로
국내 노동자의 노조도 없다. 조그만 회사에서 노
사분규가 날 경우 그야말로 벼랑끝이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헤럴드경제 4월 29일자 14면에 『노동부의 실언장담』 제하의 기사에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 1년 후 2년간 근로자로 취업하는 연수취업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기타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노조 결성을 보장받는 부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뿐’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불법취업자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가 아닌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3권 행사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조 결성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원의 상당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일 개연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4월 29일자 14면 『노동부의 실언장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연수취업자 등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를 것을 전제로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

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2005년 6월 16일까지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바로잡습니다)는 중재대상 기사의 제목(노동부의…)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6일자 13면)

내 용 : 지난 4월 29일자 14면 『노동부의 실언장담』 기사와 관련, ‘노동부는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연수취업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고 밝혀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를 점을 전제로 보도한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건축자재를 빌린 후 이를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제주중재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CTV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CTV : 「뉴스」 프로그램 (2005년 6월 2일 19:00, 21:30, 23:00)

내 용 : 제주경찰서는 지난 2003년 제주시 OO2동 46살 김모 씨의 건축야적장에서 1천 3백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빌린 후 가로채ن 복제주군 OO읍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6월 2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건축자재 사기 40대 검거” 제하의 방송을 3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모 씨는 건축자재를 가로채 사실이 없으며 또한 1천 3백만 원이라 주장했던 건축자재도 약 3-4배 정도의 금액이 부풀려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모 씨는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였고, 건축자재는 이미 오래전에 반납하여 인수증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2일 건설자재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복제주군 OO읍 45살 김모 씨는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했고, 이에 따른 인수증까지 갖고 있는 상태로, 건설자재를 임대 한 뒤 이를 가로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CTV 2005년 6월 16일 오후 7시, 9시 30분, 11시 ‘뉴스’ 프로그램 중에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

시하고, 진행자가 본문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CTV : 「뉴스」 프로그램 (2005년 6월 16일 19:00, 21:30,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기업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뺏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9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여○○ “난 조폭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6일자 5면)

내 용 :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여○○ 씨(51)가 자신은 “조직폭력 사범이 아니다”라며 서울구치소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여씨는 소장에서 “조직폭력과 관련없는 경제사범 인데도 10여 년 전 전과가 적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근거로 2001년 9월부터 각 구금시설에서 나를 조폭사범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3년8개월 동안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여씨에 따르면 조폭사범은 일반사범과 비교해 ▲가족접견 기회 박탈 ▲서신검열과 상시 감시 ▲독방수감 등의 제약이 가해진다.

여씨는 지난해 복역 중 채무가 있던 기업 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지난 5월 6일자 5면에 『여○○ “난 조폭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여씨는 지난해 복역 중 채무가 있던 기업 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 씨는 2005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채무가 있던 기업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5월 6일자 5면에 게재된 『여○○ “난 조폭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여○○ 씨는 채무가 있던 기업대표를 협박해 호텔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05년 2월 18일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2005년 6월 17일까지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6일자 3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연기군이 한국노총연기지부 복지관 신축공사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충북중재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연기군 (군수 이 기 봉)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양일보 :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16일자 3면)

내 용 : 충남 연기군이 한국노총 연기지역 지부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복지관 공사에 5억여 원의 민자보조금을 지원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여서 거액의 지원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는 오는 7월말 목표로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284-5 일대에 연면적 492㎡에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건축중에 있다. 그러나 신축되고 있는 이 부지는 연기지부의 소유가 아닌 개인명의 토지로 밝혀져 군이 개인의 명의로 된 토지에 어떻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 부지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한도액 1억 4천여만 원의 담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군은 이처럼 특정 단체에 대해 투명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3월 30일 선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지원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양일보 지난 5월 16일자 사회면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연기군 지부의 소유가 아닌 개인명의 토지로 밝혀져 군이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어떻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기군에 확인한 결과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는 1994년 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을 받은 단체로 임의단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건축물 신축부지가 개인명의로 할지라도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16일자 3면과 5월 24일자 10면에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 특혜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 ‘지상 3층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연기군 지부의 소유가 아닌 개인명의 토지로 밝혀져 군이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어떻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기군은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한국노총 연기군 지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 지역본부로부터 1994년 2월 6일 인준을 받은 단체로서 보조가 가능하며 또한, 건축물 신축부지가 개인명의로 할지라도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축비에 따른 보고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부풀려졌다”라는 보도는 본 복지관 건립공사는 보조신청시 정부의 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공인된 건축설계사가 작성한 설계서를 연기군의 전문직공무원의 설계검토·검산을 거쳐 보조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5년 6월 22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부제목(연기군, 임의단체...)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청소년위원회가 이름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부실위원회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0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 영 희)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정부 위원회’도 부실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8일자 1면)

내 용 :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의 36%는 2년간 회의를 거의 열지 않은 ‘부실 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4개 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해소된 만큼 폐지하거나 위원장 등 간부의 직급을 낮추라는 감독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올해 초 현재 행자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재경부의 독립공채상환위원회, 교육부의 직업교육훈련심사위원회, 국방부의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등 44개 위원회는 폐지 혹은 위원장 직급 하향 결정을 받았으나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꾸로 최근 들어 각종 위원회의 직급이 격상되고 있다. 교육부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위원장

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총리실 소속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도 1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8일 제1면에 보도한 『‘정부 위원회’도 부실 투성이』 제하의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거론된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 산하의 비상설자문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차관급 행정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6월 8일자 1면 『‘정부 위원회’도 부실 투성이』 제목의 기사와 관련,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자문위원회와는 다른 청소년 전담 행정위원회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2005년 6월 24일까지(토요일제외)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업체가 감염성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경기중재2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 (대표이사 허 ○)

피신청인 : 현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현대일보 : 『감염성 폐기물 처리 허술』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7일자 1면)

내 용 : 용인시 ○○면 소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체가 특정용기에 담아야 하는 병원 적출물 등을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병원 등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액상혈액이나 인체적출물 등을 상온에 보관하는 등
부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감염 우려는 물론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시 ○○면 ○○리 M업체는
경인지방 환경청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지난 1992년부
터 수도권 인근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
거 소각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수집한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
하는 과정에서 냉장보관해야 할 폐기물을 상온에서
수일간씩 보관, 적출물 등의 부패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밀폐용기에 담겨져 운반되어야 할 치료과정의

혈액 등이 비닐과 종이박스 등 일반용기에 담겨져
반입, 이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핏물이 떨어져 하역
장 곳곳에 핏물이 고여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2005년 6월 7일자 1면에 『감염성 폐기
물 처리 허술』 제하의 기사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특정용기에 담아야 하는 병원 적출물
등을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등 제대로 처
리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
으나, 사실 확인결과 (주)○○○ 및 관련 운반업체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대로 배출기관에서 수거된 전용용기 그대로 운
반하고 있으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소각처리시설
에 투입하고 있어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수집한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하
는 과정에서 냉장보관해야 할 폐기물을 상온에서 수
일간씩 보관, 적출물 등의 부패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주)○○○는 법률에 따라 부패·변질
의 우려가 있는 액상혈액이나 인체적출물을 전용 냉
동창고에 보관하여 정상가동하고 있고, 또한 폐기물
이 반입되는 즉시 바로 소각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일씩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설사
보관한다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5일을 넘
겨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밀폐용기에 담겨져 운반되어야 할 치료과
정의 혈액 등이 비닐과 종이박스 등 일반용기에 담
겨져 반입, 이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핏물이 떨어져
하역장 곳곳에 핏물이 고여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염성폐기물은 배출기관에
서 전용용기에 담겨져 밀폐포장되어 반입되며, (주)

○○○에서는 용기에 담겨진 상태로 자동투입장치를 통해 소각처리시설에 투입하고 있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현대일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5년 6월 7일자 1면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허술』 제하의 기사에서 용인시 소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상온에서 수일간 보관하는 등 병원 적출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해당업체인 (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처리절차 및 보관기준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을 적법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는 일반용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배출기관에서 수거된 전용용기 그대로 운반하여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통해 소각처리시설에 투입하고 있어 일반용기에 담은 채 운반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액상혈액이나 인체적출물은 전용의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소각시설로 반입하여 바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현대일보 2005년 7월 4일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용인시 중간처리업체 일반용기...)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본 사건기사에 대해 이후 법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 회사가 수익증권 회수를 위해 변제공탁한 것을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공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2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법원, 공탁금 42억 사기당해』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0일자 A8면)

내 용 : 광주지방법원이 허위 서류에 속아 공탁금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탁금 회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광주지법으로 42억 8천만 원의 공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황모(38·서울 구로구)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일당 김모(43) 씨를 포함해 인감과 서류위조 등 사기행위 가담자 10여 명을 쫓고 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아파트건설 시행업자인 이모(67·K건설대표) 씨와 임모(40·Y건설대표) 씨 등 2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법원에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허위 공탁금회수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 42억 8천만 원을 받아챤 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공탁금을 낸 이씨와 임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개인인감을 발급받았다. 이어 개인인감을 이용해 서울 상업등기소와 경기도 포천등기소에서 각각 임씨와 이씨의 법인인감 변경신청을 낸 뒤, 변경된 법인인감을 발급받았다. 광주로 내려온 이들은 이 법인인감을 이용해 공탁금 회수신청서를 작성, 광주의 중견 법무사에게 대행업무를 맡겨 공탁금을 받아챤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20일자 8면 『법원, 공탁금 42억 사기 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K건설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법원에 거액을 공탁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수익증권 회수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것이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이 밝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6월 20일자 A8면 『법원, 공탁금 42억 사기당해』 기사에서 'K건설 대표 이모 씨와 Y건설 대표 임모 씨 등 2명이 사기혐의로 피소돼 법원에 거액을 공탁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두 회사 측은 'Y건설이 광주 모 건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증권을 K건설이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었던 것일 뿐 피소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5년 7월 4일까지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바로잡습니다)는 중재대상 기사의 제목(서류위조해...)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 주변도로 포장공사와 개인 공적비 건립에 수해복구 공사비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2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석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KBS 스페셜」 프로그램 (2005년 5월 28일 20:00)

내 용 : ▷ 성우 : ○○시에서도 이상한 수해복구 공사가 눈에 띈다. 인적이 드문 밤밭 주변으로 도로가 잘 닦여져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수해복구 비

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문제의 밤밭은 ○○시의원인 석○○ 씨의 개인 소유지였다.

▷ 취재기자 : 어떤 공사들을 하셨던거예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공사 여기 수해복구라 해 가지고요.

▷ 취재기자 : 여기?

▷ ○○건설토목기사 김씨 : 요 주위에 하고 밤밭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순환도로. 이 길로 돌아가지고 저 뒤로 한바퀴 순환하는 도로.

▷ 취재기자 : 한바퀴 돌아온다 말이지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예. 개인적으로 볼때는 뭐 안 맞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취재기자 : 예. 요 밤밭은 전체가 지금 시의원 땅이고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그렇죠. 개인의 땅에 개인이 용도로 썼다고 그리 보면 되죠.

▷ 성우 : ○○시의원을 두 번이나 지낸 석○○ 시의원. 왜 석 의원은 자신의 밤밭에 새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수해복구 비용을 사용했을까?

▷ 취재기자 : 거기 수해복구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 석○○ : 어느 것에?

▷ 취재기자 : 밤밭에.

▷ 석○○ : 수해복구비?

▷ 취재기자 : 예.

▷ 석○○ : 그것은 모릅니다. 도량을 만드는 수해복구비는 모르고, 제가 개인으로 십전 포장한 것은 2천 3백만 원 들었습니다.

▷ 취재기자 : 그러니까 그 둘레 다 이렇게 하신 거죠?

▷ 석○○ : 예, 2천 3백만 원 들었습니다.

▷ 성우 : ○○시청을 찾아가 그 지역의 수해복구 목록을 직접 확인했다. 석○○ 시의원의 밤밭 공사를 확인 결과 밤밭 도로공사 사진이 명확히 나와

있었고, 수해복구를 한 위치도 석의원의 밤밭 주변과 일치했다. 이때 지출된 총 공사비는 1억 6천만 원을 넘는다.

▷ 석○○ :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선처를 여려가지로 해 주이소.

▷ 취재기자 : 그러면 이 공사하면서도 공적비를 만들고 그랬어요?

▷ ○○건설토목기사 김씨 : 그렇죠, 이거 끝나고 저거...

▷ 취재기자 : 요것 공사하면서?

▷ ○○건설토목기사 김씨 : 예, 이거 거의 끝날 무렵에 했죠.

▷ 성우 :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석○○ 시의원의 공적비. 여기에는 그의 생활지도자로서의 공적이 적혀 있다. 이 공적비의 기초를 조성하는 공사에도 수해복구 비용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 석○○ : 내 일생에 해는 될는지 모르지만 세운데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28일 「KBS스페셜」 '나는 왕이로소이다' 제하의 보도에서 ○○시 석○○ 시의원이 정부의 수해복구 공사비로 자신의 밤밭 순환도로를 포장하고 자신의 새마을지도자 공적비 기초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석○○ 시의원은 수해복구 공사비로 자신의 밤밭 순환도로 포장과 자신의 새마을 지도자 공적비 기초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 자신의 개인사비로 공사를 하였고, 공적비는 1987년 마을주민들이 지역발전에 공헌한 석○○ 시의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주민들의 뜻으로 성금을 모아 세웠으며, 2004년 교량 설치공사 구간에

공적비가 위치하고 있어 비석이설비(지장물이설비) 지급받아 현재의 공적비를 이설 준공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8일 「KBS스페셜」 ‘나는 왕이로소이다’ 프로그램에서 〇〇시 석〇〇 시의원이 수해복구 공사비로 개인의 밤밭 순환도로 포장과, 새마을지도자 공적비 기초공사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〇〇 시의원은 밤밭 순환도로 포장공사는 개인 사비로 공사한 것이고, 새마을 지도자 공적비는 사지마을 교량 공사의 지장물 이설을 위해 밀양시로부터 지장물이설비를 지급받아 이설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시청자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7월 16일까지 방송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프로그램 (2005년 7월 16일 1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직장상사에 의해 살해된 신청인들의 딸이 가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2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1. 황 ○ ○

2. 유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직장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일)

내 용 :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일 직장 내 여직원을 목줄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7·경기도 안산시) 씨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구 소재 모 기업 과장인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30분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번 국도 위 차량 안에서 직장 동료 황모(22·여)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격분, 목줄라 살해한 뒤 3km 떨어진 도로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부남인 이씨는 숨진 황씨와 같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면서 지난 10개월여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일 오후 원주경찰서에 자수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 지난 6월 2일자 『직장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살해된 황모 씨가 직장상사와 10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연합뉴스가 지난 6월 2일 송고한 『직장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살해된 황모 씨가 직장상사와 10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황씨의 유족 측은 숨진 황씨가 직장상사인 이모씨로부터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 “이혼할테니 결혼해달라”는 등의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2005년 7월 4일까지 사회면에 송고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자동차용 반도체’ 기술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3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장관 이 희 범)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경제 : (1) 『‘車 반도체’ 개발무산』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3일자 2면)

내 용 :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용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갈등으로 사실상 좌초됐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연간 시장규모만 20조원에 육박할 만큼 성장한 캐시카우이지만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불협화음 탓에 핵심기술 국산화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의 주선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동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자동차 기술 유출 및 투자 리스크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공동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최근 1년여 동안 공식적인 회의조차 갖지 않는 등 공조체제를 전혀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2) 『상호불신에 성장동력 ‘물거품’』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13일자 11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공동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는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쪽정이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10년 후 한국경제를 먹여살리겠다는 야심찬 구상은 결국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셈이다. (중략)

이처럼 삼성전자 없이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핵심칩 기술의 기반을 제외한 채 주변기술 개발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책사업에 참여 중인 한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차량 새시컨트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업계에서 먼저 개발해야 할 핵심칩 기술 국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모비스 역시 차량용 반도체 중 최대 시장을 자랑하는 범용 핵심품목인 마이크로컨트롤러(MCU)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시스템은 칩(SoC)의 일부 특화 기술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3일자 2면, 11면에 『‘車 반도체’ 개발무산』 제하의 기사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간 공동개발에 따른 갈등으로 개발이 사실상 좌초되었고, 성장동력사업이 마이크로컨트롤러(MCU) 등 핵심품목 개발은 뒤로 하고 시스템 온(SoC)칩 등 특화기술 중심으로 개발 진행되어, ‘썩정이 사업’으로 전락하여, 개발 지원방향에 재검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사업은, 현재 차세대반도체 성장동력 사업단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양 사는 공동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과제에 대한, CAN(Controller Area Network) IC(삼성전자 주관), UWS(Ultra Warning System, 현대모비스 주관) 등 5개 세부과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車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이 양 사의 갈등으로 사실상 좌초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6월 13일자 2면, 11면 『‘車 반도체’

개발무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사업은, 현재 차세대반도체 성장동력 사업단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과제에 대한 CAN(Controller Area Network) IC(삼성전자 주관), UWS(Ultra Warning System, 현대모비스 주관) 등 5개 세부과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2005년 7월 7일자 2면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빅수먼 패션쇼’에 참가한 여섯을 ‘통통미인대회’ 1등 수상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3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 영 숙) 외 2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6.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진실게임」 프로그램 (2005년 6월 7일 20:55)

내 용 : (전략)

▷ 유재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각 미인대회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과연 이분들 가운데 진짜 미인대회 그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신 단 한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들과 함께 진실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석 :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통미인대회 1위분 소개해주세요.

▷ 정○○ : 네 시작은 뼈쩍 꼬랐으나 나중은 비대하리라.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통통미인대회 1등 정○○ 입니다. 통통미인대회가 있을까 정말 의심하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55사이즈는 가라 88, 99, 100 빅 사이즈를 입는 미인대회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석 : 과감히 얘기하셨습니다. 55사이즈는 가라. 과연 이분이 말씀하신 통통미인대회가 있는지.. 자 다음!

-각 참가자 소개 후

▷ 유재석 : 박찬민 아나운서는 어땁니까?

▷ 박찬민 : 개인적으로는 연변아가씨가 맘에 들고요. (웃음) 누가 진짜일 것 같으냐면 제가 똥똥한 사람들의 미인대회를 본적이 있어요. TV에서... 근데 저 분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특징이 다들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저분 같은데요. 통통미인대회.

▷ 유 : 그래서 박찬민 아나운서는 통통미인대회 1위 저분이 오늘의 진짜일 것 같다.

▷ 박 : 가장 자신감 있어보여서요.

▷ 유 : 일단 원미연 씨가 오늘의 첫번째 질문을 해주시지요.

▷ 원미연 : 미스코리아나 라운드걸 대회, 연변아가씨 대회, 온갖 토산물 대회는 뭔가 지금 많이 들

어본 미인대회잖아요. 근데 다른 대회는 지금 처음 들어본단 말이죠. 어떤 미인대회인지..?

▷ 유재석 : 어떤 대회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 원미연 : 네.

▷ 정○○ : 올 4월에 열린 대회입니다. 88 이상 빅 사이즈 여성 400명이 모여서요, 그중에서 미를 경합하여 최종적으로 20명이 뽑혔구요. 최종적으로 뽑힌 20명은 한국 빅우먼 패션쇼에 참가하였습시다.

▷ 유 : 아~ 그렇군요.

▷ 정 : 네.

▷ 원 : 얼마전에 패션쇼를 했죠.

▷ 정 : 네.

▷ 원 : 그분들이..

▷ 정 : 네.

▷ 원 : 그 무대를 어디서 했었어요.

▷ 정 : 음.. 삼성동.

▷ 유 : 원미연씨가 뭔가 알고 계신다는 듯이..

▷ 송은이 : 적어봐 적어봐.

▷ 정 : 이번에 대회 나왔을때요. 장기자랑으로 했던 것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략)

▷ 유재석 : 과연 이분들 가운데 어떤분이 과연 미인대회 1위를 하신 수상자일지 지금부터 진실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연변아가씨 대회 1위를 하신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 유 : 지금 통통미인대회 일등을 차지하신 저분 5분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저분이 과연 진짜일지 자~! 통통미인대회 1위!!! 저분을 한번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함께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의 종아 울려라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과연 오늘의 진짜일지. 셋!

▷ 전원 : 진실의 종아 울려라~! (진실판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6월 7일 「진실게임」 프로그램 ‘진짜 미인대회 수상자를 찾아라’ 제하의 방송에서 ‘통통미인대회 1등’으로 출연한 출연자가 진실의 종을 울리며 진실로 판명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빅우먼 패션쇼의 기획 취지를 왜곡하였기에 정정보도합니다.

‘빅우먼패션쇼’ 기획취지는 미의 기준에 순위를 매기지 말며,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문제제기를 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갖춘 미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통통미인대회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지난 6월 7일 “진짜 미인대회 수상자를 찾아라” 편에서 진실로 판명된 ‘통통미인대회 1등’은 제작진이 임의로 명명한 명칭인 바, 존재하지 않는 대회였습니다. 출연자는 한국여성재단 등이 주최한 ‘빅우먼 패션쇼’ 모델이었습니다. 명칭과 성격이 취지와 달리 방송된 데 대해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 ‘진실게임’ 2005년 7월 12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통통미인대회 관련 정정보도)과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진실게임」 프로그램 (2005년 7월 12일 20:56)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생산한 형광열대어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237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7.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2005년 6월 2일 08:00)

내 용 : (전략)

▷ 정○○ :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형광물고기. 반짝이는 물고기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형광열대어인데요. 이렇게 일반 물고기와 색깔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신기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 남자1 : 수족관을 한 10여년을 해 봤지만 이런 고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 정○○ : 이처럼 신기하기만 한 녀석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이 물고기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종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한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형광열대어는 산호초에서 추출한 형광유전자를 일반 열대어의 수정란에 주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 조작 생명체입니다.

▷ 심○○ : 형질 전환된 물고기를 만든다는 자체

는 생태계에 없는 것을 만든 거니까 기술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정○○ : 하지만 정식 시판을 앞두고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형광열대어 도입이 자칫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박○○ : 물고기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과연 물고기에만 그냥 있을 것인지 이것이 물을 타고 어떤 먹이사슬을 타고 퍼져나가지는 않을지, 그것이 그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자극이, 반응이 올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요.

▷ 정○○ : 이 형광열대어처럼 빛을 쬐면 적색, 보라색 등으로 변하는 물고기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어종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 박○○ : 유전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생산하는 거죠.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경우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드러날 정도로 발견했다는 것은, 이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정○○ : 또한 안정성의 검증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불안요인 중 하나인데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경우 2002년부터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상어의 경우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 : 저희 해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관상어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략)

▷ 김○○ :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유전자 조작 곡식을 먹은 가축들이 기형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저도 접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언제 올라 두려웠던 굉장히 큰 일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

게 보면 재앙으로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유전자 조작 물고기 역시 생태계와 자연계를 망가뜨릴까 봐 사실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정○○ : 정말 보기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서 예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들이 과연 환경에 유해성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멀리 내다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브리핑 정○○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6월 2일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국내 시판을 앞둔 형광열대어가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형광제브라가 만들어 내는 형광 단백질은 자연의 산호초에서 추출한 형광단백질을 삽입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산호초는 많은 해양어류의 주요한 먹이이므로 자연 생태계에 아무런 해가 없으며, 형광제브라가 자연 생태계로 흘러가더라도 이를 포식한 물고기나 새 등에게 유전자 변형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연생태계로 흘러간 형광제브라는 수온이 19도에 이르면 활동이 저하되며, 10도에 이르면 죽으므로 자연 생존할 수도 없고 대만, 미국 등지에서는 이와 같은 형광제브라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 12월 9일 형광 제브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일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국내시판을 앞둔 형광열대어가 일반 열대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광열대어를 생산하는 신청인은, 미국 FDA가 유전자 조작을 거친 형광열대어가 그렇지 않은 열대어에 비하여 환경에 더 많은 위협을 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MBC-TV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말미에 7월 22일까지 방송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2005년 7월 18일 0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지체장애인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경기중재3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5. 7. 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일보 : 『“나도 빌려준 돈 못받았다”』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23일자 19면)

내 용 : 평택S중, 현직 교사 금전문제로 장애인들 학교 정문에서 시위 보도가 나간 후 문제가 된 평택 S중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 2003년에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1급 중증 장애인 김모 씨에게도 3년여간 악성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밝혀져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략)

19일 평택 S중학교 정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의 시위가 있는 후 이 교사는 자신의 교과목 수업시간에도 장애인이 나눠준 호소문 전단지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의 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교사에게 수업을 듣고 있는 S중학교 1학년 K 모군에 의하면 “이 선생님은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사건을 전단지를 보여주며 조작이 됐다고 하며 수업은 20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며 특히 “자신의 정당성을 부모님들에게 알릴 것”을 종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어 더욱 파장이 커지는 중이다.

한편, 이 교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자신은 고리의 이자를 주다가 형편이 안 되어 갚지 못하는 중이다”라고 일축하며, 모든 사건은 학교재단 측의 조작이며 채무이행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을 법적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교사는 S중 재직중 3년 전인 2001년 담임을 맡고 있을 때 학부모 3명으로부터 금전

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사실이나, 동료 교사들도 이 교사와 채무관계가 존재함을 밝히는 등의 사실이 돌출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교사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갈수록 양 측의 주장이 팽배해지고 있어 향후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3일자 사회면에 『“나도 빌려준 돈 못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평택 S중학교 L교사가 장애인에게 빌린 5천만 원을 3년간 갚지 않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부모님에게 알릴 것을 종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학부모·동료교사에게도 장기 채무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1인 시위를 하던 Y씨는 고리사채업자이며 과도한 채무상환요구로 인하여 현재 L교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업권 침해 부분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학부모·동료교사에게 장기 채무가 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3일자 사회면에 『“나도 빌려준 돈 못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평택 S중학교 L교사가 장애인에게 5천만 원을 3년간 안 갚고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부모님에게 알릴 것을 종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학부모·동료교사에게도 장기 채무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모 교사는 현재 2천 5백만 원 이상을 상환한 상태이며 채권자가 과도한 채무상환을 요구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수업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학부모·동료교사에게 장기 채무가 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5년 7월 20일 19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장애인에 5천만 원 3년간 안 갚은 평택 S중 L교사)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20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